

사 규 번 호	
관 리 부 서	
등 급	일 반

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

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

2021.03.26 제정

2024.05.07 개정

제 1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권한)

- ①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,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- ③위원회는 추천된 사외이사후보의 수가 본인 거절 등의 사유로 선임예정인 사외이사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사외이사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- ④위원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⑤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.
- ⑥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였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해당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제 2 장 구성

제 4 조(구성)

- ①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
- ②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위원의 사임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 잔여 사외이사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, 잔여 사외이사가 없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위원회 구성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.

제 5 조(위원장)

- ①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의

제 6 조(소집)

-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-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 5조 3항을 준용한다.
- 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일시, 장소,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구두, 전자우편, 문서 등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7 조(소집절차)

-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.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9 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(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상법 제 548조의8 제 5항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 ·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)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)
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(통지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사록)

-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칙

제13조(간사)

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위원회의 사무 등을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4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(개정) 이 규정은 2024년 05월 0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